

2024년 4단계 BK21사업 우수대학원생 국제공동연수 3차 공고 관련 FAQ

<BK21사업팀, '24. 11. 13.>

□ 공고 및 선발

Q1. 국제 공동연수 기간을 1년 이내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A1. 국제 공동연수 기간은 '6개월/12개월' 2가지 중 하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연수 개시 후 6개월 미만 내 연수 중단 시, 연수비는 항공료를 포함한 전액 반납해야 하며 해당 학생은 이후 4단계 BK21사업 국제 공동연수 사업 참여 희망 시 패널티 부여 가능(6개월 신청자도 해당)

Q2. 기존 대학 선발 대상도 재단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A2. 네 맞습니다. 3차 공고는 별도의 대학 선발을 진행하지 않고,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Q3. 대학별 지원 가능 인원 또는 교육연구단(팀)별 지원 가능 인원이 정해져있나요?

A3. 대학 또는 교육연구단(팀)별 지원 가능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Q4. 지원자격 중, "3개월 이상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한 자"에서 3개월 이상 사업 참여는 '박사과정'으로의 참여인가요?

A4. 석사,박사,통합과정 모두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참여하셨으면 됩니다.

Q5.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는 "참여대학원생" 요건을 만족하나, 선정이후 해당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지원이 불가한가요?

A5. 신청서 접수 마감일자 기준으로 신청 자격요건을 만족하나, 선정 이후에 참여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국제 공동연수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

※ 연수기간 동안 BK21사업 참여 현황 유지 시, 연구장학금 외 국제화경비 등 사업비 집행가능

Q6. 석·박사 통합과정생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6. 석·박사 통합과정생의 경우, 대학 내부 규정 상 박사과정에 준하는 참여대학원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 통합과정생인 자여야 합니다.

Q7. 국제 공동연수지 및 연수기관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7. 국제 공동연수지 및 연수기관에 대해 참여대학원생 및 지도 교수와의 논의 후 연수지 및 연수기관을 컨택 및 선정하시고, 해당 선정완료 사항을 연수계획서에 포함시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기관 확정 관련 서류는 대학에서 보관증빙으로 구비해와주시면 됩니다.

Q8. 국제 공동연수 계획(연수기간,기관 등) 변경 시 사업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한 변경 신청과 함께 재단으로 공문 발송도 필요한가요?

A8. 국제 공동연수 계획 변경 시, 사업 종합정보시스템(<https://bk21four.nrf.re.kr/bkms>)을 통한 변경 승인 요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 연수계획 변경 신청 관련 시스템 이용 안내 방법 [별첨4] 참고

Q9. 최종선정 이후, '25.2.28까지 출국이 어려울 경우, 출국일 연장이 가능한가요?

A9. 금번 공고에 의해 선발된 경우에 한하여 '25.2.28.까지 출국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반납 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 출국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출국일을 연수개시일로 함

Q10. 연수 개시 후,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한 중도 귀국이 가능한가요?

A10. 연수 개시 후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 귀국할 경우, 항공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월할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도 귀국의 경우 재단으로 사전에 사업 중도포기 신청 공문을 보내 주셔야 합니다.

※ 단, 연수 개시 후 6개월 미만 내 연수 중단 시, 연수비는 항공료를 포함한 전액 반납해야 하며 해당 학생은 이후 4단계 BK21사업 국제 공동연수 사업 참여 희망 시 패널티 부여 가능(6개월 신청자도 해당)

Q11. [서식1] 국제 공동연수 지원 신청서 상 작성하는 어학능력 자격시험 취득점수의 경우, 만료된 점수여도 가능한가요?

A11. 만료된 점수여도 기재 가능합니다.

□ 사업비 지급 및 결과보고

Q1. 우수대학원생 국제 공동연수 선발 대상자에 대한 지원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A1. 재단에서 대학(주관기관)으로 입금이 되며, 대학 내 관련 부서에서 연수생 개인 계좌로 지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 협약관련 세부 절차는 최종 선발인원 공지 이후 별도 안내 예정

Q2. 항공권의 경우, 일정상의 사유로 학생 또는 대학이 선결제 후 협약액이 입금되면 페이백 처리해도 되나요?

A2. 학생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먼저 선결제 한 후, 협약금액 입금 이후 페이백 또는 계정대체 진행 가능합니다.

Q3. 국제 공동연수비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3. 정산 관련 안내는 추후 다시 드릴 예정입니다

Q4. 결과보고 관련 서류(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결과보고서)는 언제 제출 하면 되나요?

A4. 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결과보고서는 해당 서류 제출 기한 내, 연수자가 대학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대학에서는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취합하여 시스템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기타 사항

Q1. 연수기간 중, 한국 일시 방문 또는 제 3국을 방문할 경우, 방문 일자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연수기간 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하며, 15일 이내 범위에서 한국 일시 방문 또는 제 3국 방문시, 대학에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외 공동연구 수행 중 일시 귀국을 할 수 있는 허용일수(귀국허용일수)는 전체 연수기간 1년 중 출국과 입국일을 포함하여 연간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허용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불인정하여 일할 계산하여 정산 시 반납해야 함